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3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외국문 제증명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문 제증명수수료 징수(제3조 단서조항) 관련 조항 삭제하여 외국문 제증명수수료 무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2

o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o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자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o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o 입법예고(2023. 9. 1. ~ 9. 21.)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o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o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o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별첨 3)

o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별첨 4)

o 관계법규 : 별첨 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마다 600원을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단서 삭제>----------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1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외국문제증명 수수료발급 무료화)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나, 소액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2022년: 6,690천원, 최근 5개년도 평균: 약9,205천원). 예상되는 수입의 감소가 5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행정7급 이효은(02-3999-632)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3	
법 령 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 서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효은 / 02)399-96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23 년 8 월 23 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종합 검토 의견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10 월 10 일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책 임 관

담당자 / 연락처 : 홍 정 미 / 02)399-9675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이효은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조 단서	- 본 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 중 유일하게 유료(600원)로 제공 중인 외국문 제증명수수료 무료로 개정하여, 초·중·고 교육 제증명 수수료 전체 무료서비스 실현 및 국민 편익 증진하도록 규정함 -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원안동의

【별첨 5】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6.9., 타법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